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5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김용연, 김화숙, 이병도,
김제리, 이광성, 문장길,
이영실, 최기찬, 오현정,
김정환, 김혜련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현행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은 보호 이후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게 되었음. 따라서 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울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각 호)
- 나.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 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 라. 피학대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치료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치료
3.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

② 이외에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 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신설〉	4. 법 제41조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설〉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 ⑭ (생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신설〉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u>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치료</u></p> <p>2. <u>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치료</u></p> <p>3. <u>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u></p> <p>4. <u>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u></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④ <u>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u>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1. <u>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u></p> <p>2. <u>동물등록비용</u></p>

현행	개정안
<p><u>제14조</u>、<u>제15조</u> (생략)</p> <p><u>제16조</u>(소요경비의 징수) 법 <u>제19조</u>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u>제17조</u> ~ <u>제24조</u> (생략)</p>	<p>3. <u>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u></p> <p>② <u>이외에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제16조</u>、<u>제17조</u> (현행 <u>제14조</u> 및 <u>제15조</u>와 같음)</p> <p><u>제18조</u>(소요경비의 징수) ----- ----- -----.</p> <p><u>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u></p> <p><u>제19조</u> ~ <u>제26조</u> (현행 <u>제17조</u>부터 <u>제24조</u>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에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에서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이상 반려견 한정, 고양이는 동물등록제도 미해당) 및 1년치 동물보험료 지원비용(반려묘만 해당, 반려견은 기 추진 중)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이상 반려견 한정) 및 1년치 동물보험료 지원비용(반려묘)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2018년 12월 기준 유기동물의 입양건수는 이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019년 소관부서 자료 기준, 2018년 유기견 입양 실적 1,500여마리)
※ 유기묘 입양의 경우 285마리로 추정(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참조)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 및 유기동물 입양시 지원단가도 비용추계기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비는, 시유재산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한다는 전제하에 2017년 ‘동물복지지원시설조성사업’ 예산 참조하여 산출(설계비 및 공사비 1,00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0천원)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운영비는, 2018-2019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예산 평균(연516,370천원) 및 20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지원예산(200,000천원)을 참조하여 산출(단,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재 직영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는 별도 계상되지 않은 운영비임)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으로 한정하고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추가비용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보험비 지원의 경우 반려견은 서울시 기추진 중이므로('19년 예산 420,000천원, 사업목표 2,000마리), 반려묘만 대상으로 비용산출하되 지원단가는 반려견 지원단가 참조(연210천원/마리)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4,789,610천원(연평균 957,92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기동물응급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	1,150,000	816,340	816,340	816,340	816,340	4,415,360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조례안 제15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5조)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299,250
	소계(b)	1,224,850	891,190	891,190	891,190	891,190	4,789,610
□ 총 비용(b-a)		1,224,850	891,190	891,190	891,190	891,190	4,789,61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이상 반려견 한정) 및 1년치 동물보험료 지원비용(반려묘)

2. 세부추계내역

- 2018년 12월 기준 유기동물의 입양건수는 이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019년 소관부서 자료 기준, 2018년 유기견 입양 실적 1,500여마리)
※ 유기묘의 경우 입양통계 찾기 어려워 반려견(84%)과 반려묘(16%)의 비율로 계산하여 285마리로 추정(2017년 서울서베이 결과 반려견 785,877마리, 반려묘 149,410마리)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비는, 시유재산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한다는 전제하에 2017년 ‘동물복지지원시설조성사업’ 예산 참조하여 산출(설계비 및 공사비 1,00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0천원)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운영비는, 2018-2019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예산 평균(연516,340천원) 및 20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지원예산(200,000천원)을 참조하여 산출(단,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재 직영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는 별도 계상되지 않은 운영비임)
 - 20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원예산 200,000천원 중 인건비는 81,50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동물병원 겸임 수의사 2명 및 행정직 1명과 10개월 운영으로 계획되었으므로 단순참조하여 인건비 3억으로 가정 (전임 수의사 2명, 일반직 6명)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추가비용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마리당 10천원)
※ 동물등록제도의 경우 현재는 반려묘 미시행(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나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504마리의 실적으로 참여 저조하였으며, 서울시는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3개구에서 실시한 실적이 총49마리임/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일정 미정)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보험비 지원의 경우 반려견은 서울시 기추진

중이므로('19년 예산 420,000천원/사업목표 2,000마리) 반려묘만 대상으로
비용산출하되 지원단가는 반려견 지원단가 참조(210천원/마리, 1년 지원 기준)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

- 설계비 및 공사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000,000천원 + 150,000천원
= 1,150,000천원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 = $\sum_{i=1}^4$ (연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4년)

- 연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
= 일반운영비 + 인건비
= 516,340천원 + 300,000천원
= 816,340천원

※ 인건비는 수의사 1억(2명 가정), 일반직 2억 가정(6명 가정)

※ 운영비는, 동물구조 지원 및 동물병원 등의 기능이 있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2017년 10월 설치)의 2018년(626,120천원), 2019년(406,560천원) 운영예산
평균인 연516,340천원으로 산출

○ 유기동물 입양시 등록비용 = $\sum_{i=1}^5$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등록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등록비용
= 연간 입양 반려견 수 × 지원단가
= 1,500마리 × 10천원
= 15,000천원

○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비용 = $\sum_{i=1}^5$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비용
= 연간 입양 반려묘 수 × 지원단가
= 285마리 × 210천원
= 59,850천원